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8. 25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8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9. 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류인섭)

가. 제안이유

○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(상이등급의 구분)의 개정(6급 → 7급)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
: 상이등급 1~6급 → 상이등급 1~7급(안 제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### 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- ## 가. 찬성토론

- ### ○ 없 음

- #### 나. 반대토론

- ### 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- ## ○ 원안의 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읽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60호
의결년월일	2000. 9. 5 (제80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5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(상이등급의 구분)의 개정(6급 → 7급)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세각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 : 삼이등급 1~6급 → 삼이등급 1~7급(안 제2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 제2항 본문 중 "6급"을 "7급"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실·구조문 대비표